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준형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1124
----------	-------

발의연월일 : 2026. 9. 7.

발 의 자 : 김준형 · 서왕진 · 차규근
황운하 · 김재원 · 신장식
정춘생 · 강경숙 · 김선민
정혜경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외여행 국민에게 여권의 소지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여권을 발급받은 자에 대해 여권의 분실 등에 따른 범죄 악용을 방지하기 위한 보관·관리 의무에 대해서는 별도로 명시하고 있지 않음.

한편, 현행법 시행령에 따르면 외교부장관은 분실·변조 등으로 효력이 상실되거나 무효처분된 여권에 관한 정보를 법무부·경찰청 등 관계 행정기관,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분실·무효처리된 여권은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크므로 해당 여권에 대한 정보 제공 근거를 법률로 상향 규정하여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여권을 발급받은 사람이 여권이 분실·도난되어 도용되지 아

니하도록 보관·관리에 주의하도록 하는 한편, 효력상실·무효처분된 여권에 관한 정보 제공의 근거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여권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항 및 제13조제4항 신설).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여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여권을 발급받은 사람은 그 여권이 분실·도난되어 도용되지 아니하도록 보관·관리에 주의하여야 한다.

제13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외교부장관은 제1항제3호·제5호·제6호 및 제8호에 따라 여권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제3항에 따라 여권을 무효처분한 때에는 여권의 부정사용과 국제적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무부·경찰청 등 관계 행정기관 또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외국정부나 국제기구에 여권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여권의 소지) (생 략) <u><신 설></u>	제2조(여권의 소지) ① (현행 제 목 외의 부분과 같음) <u>② 여권을 발급받은 사람은 그 여권이 분실 · 도난되어 도용되 지 아니하도록 보관 · 관리에 주의하여야 한다.</u>
제13조(여권의 효력상실) ① ~ ③ (생 략) <u><신 설></u>	제13조(여권의 효력상실) ① ~ ③ (현행과 같음) <u>④ 외교부장관은 제1항제3호 · 제5호 · 제6호 및 제8호에 따라 여권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제3 항에 따라 여권을 무효처분한 때에는 여권의 부정사용과 국 제적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무부 · 경찰청 등 관계 행정 기관 또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 라 외국정부나 국제기구에 여 권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u>